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 11. 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관계자의 자세 재정립

현재 우리사회는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이하며 우리의 역량을 생산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방향(국가경쟁력 강화)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행정도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제반시책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것도 평소 안전·보건관리를 잘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보완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계자는 새로운 환경변화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노력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인식제고로 산업안전보건행정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첫째, 현재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규제완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스스로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를 잡아가는 창의적 변동의 역군, 즉 노·사가 사업장에서 어려운 일,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찾는 산업안전보건관계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의식개혁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사업장을 지도·감독·조언을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계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공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보아야 하고,

셋째, 지날날의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일하던 관행을 고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지도·조언 등을 하는 등 철저한 봉사를 함으로써 노·사 양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끝으로 금년도 산업재해 감소목표인 선진국 수준 재해율 1% 미만 달성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이의 달성에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노동부-

부록 1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4. 3. 29. 공포, 부령 제89호)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2. (생략)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③ (생략)	제2조(정의) ② (본문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② (본문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② (본문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② (본문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1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 2. 영별표 3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본문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본문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본문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본문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 영 별표 5 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2. 도료제조업 3. 연탄제조업 4. 석면제품제조업 5. 제1차금속산업 6. 도금업 7.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8. 영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제조하는 사업과 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별표 5 제21호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생산업 2.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다) 3. 석면제품제조업 4. 제1차 금속산업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별표 5 제21호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생산업 2.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다) 3. 석면제품제조업 4. 제1차 금속산업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별표 5 제21호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생산업 2.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다) 3. 석면제품제조업 4. 제1차 금속산업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별표 5 제21호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생산업 2.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다) 3. 석면제품제조업 4. 제1차 금속산업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록 1

현행	개정 (안)
<p>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③(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사·건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u>장소</u> 2.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피될 우려가 있는 <u>장소</u> 3.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u>장소</u> 4.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u>장소</u> 5.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u>장소</u> 6.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u>장소</u> 7.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u>장소</u> 8.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u>장소</u>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 규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상의 지침 및 영 제26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p>
<p>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 ①~②(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 ①~②(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은 건설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업무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지도감독, 수수료 기타 안전관리비 사용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33조(안전·보건교육 등)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사업장 소속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생산직 종사근로자는 매월 2시간, 사무직</p>	<p>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p>

부록 1

현행	개정 (안)
<p>종사근로자는 매일 1시간이상으로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8시간(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시간이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의한 교육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영별표 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16시간(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시간)이상으로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⑤ 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1. 법 제13조 내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p> <p>2.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③ 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1. 법 제13조 내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p> <p>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제33조의 2(안전·보건교육의 면제)</p> <p>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p>

부록 1

현행	개정 (안)
<p>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라 함은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 총괄하는 자로 한다.</p> <p>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p> <p>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사업주는 4시간이상, 관리감독자는 6시간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p> <p>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65조 및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한다.</p> <p>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고, 그 명단을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p>	<p>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라 함은 <u>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 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p>

부록 1

현	행	개	정 (안)
	<p>실시하기 <u>7일전까지</u>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실시하기 <u>15일전까지</u>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39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생략)</p> <p>2. <u>안전관리자</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5. (생략)</p>		<p>제39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본문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u></p> <p>3.~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⑥ (현행 제4항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p> <p>③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실시에 이를 준용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 신고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부록 1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생략)</p> <p>② 영 별표 4 제10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중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42조(직무교육) ①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는 당해 자체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p> <p>② (생략)</p> <p>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명단을 자체검사원으로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자체검사원에게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고 그 명단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간은 6시간이상</p>	<p>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단서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의가 당해법령에 의한 직무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③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42조(직무교육) ①</p> <p>.....</p> <p>.....</p> <p>.....</p> <p>..... 자체검사업무를 행하기 전에</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그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p>			

현행	개정 (안)
<p><u>으로 하고, 교육의 내용·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u></p> <p>(신 설)</p> <p>제43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간은 28시간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내용·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u></p> <p>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43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44조(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간은 136시간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방법·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신 설)</p>	<p>제43조의 2(자체검사원교육의 면제) 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대상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당해직무교육은 이를 면제한다.</p> <p>② 제42조제1항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이 면제된 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전직 전과 동일한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전직 전의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제44조(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부 록 1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보건관리자 양성교육)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 선임되어야 할 보건관리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별표 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u>보건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 양성교육에 이를 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 등)</p> <p>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p> <p>1.~5. (생 략)</p> <p>6. <u>공기압축기(토출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매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인 것으로서 토출량이 매분당 1입방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u></p> <p>7. (생 략)</p> <p>② 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u>설계검사(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u></p> <p>③ 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 중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u>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u></p> <p><u>다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u></p> <p>④ (생 략)</p>	<p>제45조(보건관리자 양성교육) ① ……………</p> <p>……………</p> <p>……………</p> <p>… 보건관리자 양성교육을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45조의 2(교재) 제38조제2항·제39조제2항·제42조 제1항·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u>다만, 해당교재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u></p> <p>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 등)</p> <p>① (본문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7.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p> <p>…………… <u>설계검사</u> ……………</p> <p>……………</p> <p>③ <u>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u></p> <p>…………… <u>제5호 및 제7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u></p> <p><u>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정기검사로 같음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p>

부록 1

현행	개정 (안)
<p>제58조의 2(검사의 실시시기 등) 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p> <p>1.~3. (생략)</p> <p>4. 정기검사 : 최초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 리프트·승강기 및 보일러는 1년) 1회, 이 경우 검사신청은 <u>검사주기만료일 후 15일까지</u>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58조의 2(검사의 실시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검사주기만료일 전 15일</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0조(검정대상범위)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4. (생략)</p> <p>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u>감전 또는 용접작업에 의한 화상</u>을 방지하기 위한 것</p> <p>6.~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58조의 4(수입기계·기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확인)</p> <p>① 노동부장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품이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 전에 실시하는 <u>설계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62조(검정방법)</p> <p>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0조(검정대상범위) (본문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u>감전</u></p> <p>6.~9. (현행과 같음)</p> <p>10. 영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송기마크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을 제외한다)</p> <p>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열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p>
<p>제62조(검정방법)</p> <p>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2조(검정방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호구의 부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부품에 대한 검정 또는 시험을 면제한다.</p>

부록 1

현	행	개 정 (안)
<p>제63조(검정신청절차)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구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방법설명서 2. (생략) 3. 완성품의 내외모습을 찍은 칼라사진 1매 4. 제조 또는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 <p>5.~7. (생략)</p>	<p>제63조(검정신청절차)</p> <p>.....</p> <p>.....</p> <p>.....</p> <p><u>다만, 최초로 검정을 신청할 때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u>제조 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보호구를 제조한 자와 국내판매 대리점간의 계약 또는 공급을 증명하는 서류)</u> 5.~7. (현행과 같음) 	
<p>제67조(합격의 표시) 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제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격마크 2.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이라는 문자 3.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4. <u>수입·제조연월일 및 합격년월일</u>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생략)</p>	<p>제67조(합격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수입(제조) 연월일 및 합격년월일</u> 5. <u>제조(수입)자명</u> ② (현행과 같음) 	
<p>제74조(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법·영·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u> <p>3.~5. (생략)</p>	<p>제74조(자체검사원)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u> <p>3.~5. (현행과 같음)</p>	
<p>제83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방법)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는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과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또는 이와</p>	<p>제83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방법) <u>① (현행 본문과 같음)</u></p>	

부 록 1

현 행	개 정 (안)
<p>동등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나 발암성 시험으로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등)</p> <p>①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7. <u>최초 1년간 측정사업계획서</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③ (생략)</p> <p>제97조의 3(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의 지정)</p> <p>① <u>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전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유해인자별로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의 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u></p> <p>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4알킬연·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증상이 있는 근로자 또는</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를 위한 시험은 <u>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실험실에서 하여야 한다.</u></p> <p>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등)</p> <p>① (본문현행과 같음)</p> <p>1.~6. (현행과 같음)</p> <p>7. <u>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u></p> <p>8. <u>측정대상사업장의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사업장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 한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7조의 3(유해인자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p> <p>① <u>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u>유해인자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u></p> <p>제98조(정의) (본문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소음·분진·진동·연·4알킬연·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증</p>

현	행	개	정 (안)
	<p>당해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 및 당해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시 또는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임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p>상이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인자에 폭로되거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 및 당해인자에 폭로되거나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p>
	<p>제99조의 2(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 ① 제9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정기적인 건강진단에 한한다) 실시시기를 별지 제21호(14) 서식에 기재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20일전까지 특수건강진단실시계획을 별지 제21호(15) 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9조의 2(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 ①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②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p>
	<p>(신 설)</p>		<p>제103조의 3(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104조(지정의 취소) ① (생략) (신 설)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04조(지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동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0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p>

부 록 1

현	행		개 정 (안)
			<u>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u>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업무)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직시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할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u>석면제품을 제조하는 경우</u> 4.~11. (생략)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업무) (본문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u> 4.~11. (현행과 같음)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은 제108조 각호의 1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장을 이직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u>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u> 이 교부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u>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을 받은 <u>지방노동관서의 장</u> 은 당해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 ① <u>공단</u> 1.~7. (현행과 같음) ② <u>공단에</u> ③ <u>공단</u>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u>지방노동관서의 장</u> 은 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수첩을 교부받은 당해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수진 기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u>공단</u>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u>수첩소지자</u> 가 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강관리수첩 재교부 신청서를 <u>최초 발급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u> 에게 제출하고 수첩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u>공단에</u> ② (현행과 같음)	

부록 1

현행	개정 (안)
<p>③ 수첩소지자는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u>재교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u></p> <p>④ 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 당해수첩을 첨부하여 <u>변경된 주소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15조(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수첩소지자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체없이 당해수첩을 <u>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p> <p>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합물과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 제1차 금속산업 3.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4. 가스업 <p>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생략) 	<p>③ <u>공단에</u></p> <p>④ <u>공단에</u></p> <p>제115조(수첩의 반환) <u>공단에</u></p> <p>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 응집 고체연료생산업 2. 코크스·석유정제품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제조업 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14. 가스업 <p>② (본문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부록 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생략)			5. 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첨부서류)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121조(첨부서류) ①
	1~3. (생략)		 <u>공단에</u>
	(신 설)			
	4.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26호 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4. 계획서 제출대상 설비의 설치상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서류
	1~7.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u>공단에</u>
			
				1~7. (현행과 같음)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21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①	<u>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u>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를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증지나 계획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4조(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에 각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u>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		제124조(확인) ①
			
			
			 <u>공단</u>
			

부록 1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u>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4 (생략) ③ (생략)</p> <p>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u>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u>”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3. (생략) ② (생략)</p> <p>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사업장 등) ①~⑥ (생략) ⑦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4. (생략) 5. <u>총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이로서 중대재해발생일 현재 공정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건설현장</u> 6. <u>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u></p> <p>제136조(협조의 요청) <u>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등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거나,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1. <u>건설공사 등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u> 2. <u>재해율이 동종업종 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u></p>	<p>② <u>공단</u>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본문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철도·도로·하천·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u> 4. <u>총연장 50미터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공사</u> 5. <u>총연장 200미터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u>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사업장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본문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u>제1호 내지 제4호</u></p> <p>제136조(협조의 요청) ① <u>노동부장관은 건설업자인 사업주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회계법 제95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거나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의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u></p>		

부록 1

현행	개정 (안)
<p>제144조(보존기간)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u>5년으로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은 당해재해를 발생시킨 건설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그 요청기준은 <u>별표 19와 같다.</u></p> <p>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과실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u>별표 19의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하여 요청할 수 있다.</u></p> <p>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u>건설업자인 사업주에 대한 건설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에 있어서의 감액 조치</u> 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u>건설업자인 사업주에 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 따른 제한</u> 3.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⑤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업자인 사업주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사망자의 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제144조(보존기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u>30년으로 한다.</u></p>

부 록 1

현행	개정 (안)
(신설)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제121조·제122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60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제2조(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계 및 설비 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계 및 기구 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p> <p>제3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검사기관·지정측정기관·건강진단기관 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본다.</p> <p>제5조(건강관리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으로 본다.</p> <p>제6조(직무교육수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부록 1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94. 3. 29. 공포, 부령 제90호)의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p>제8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내압을 받은 <u>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u> (이하 “<u>압력용기 등</u>”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87조(회전부의 덮개 등) 사업주는 <u>압력용기 등의 원동기·축이음쇠·벨트·폴리의 회전부위 등</u>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00조(양중기) ①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u>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u> 2~4. (생략)</p> <p>제109조(취업제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당해 크레인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u></p> <p>제136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리프트의 <u>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 운반구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8조의 2(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기타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하중·적설·풍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86조(사용의 제한) <u>압력용기</u></p> <p>제87조(회전부의 덮개 등) <u>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u>(이하 “<u>압력용기 등</u>”이라 한다)</p> <p>제100조(양중기) ① (현행과 같음) ② 1. <u>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u> 2~4. (현행과 같음)</p> <p>제109조(취업제한) <u>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외의 자를</u></p> <p>제136조(탑승·무인작동의 제한) ① 사업주는 내부에 <u>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부 록 1

개 정 전	개 정 후
<p>제161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u>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승강로탑 및 가이드레일지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1.~3. (생략)</p> <p>② (생략)</p> <p>제363조(거푸집지보공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 지보공 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u>지주의 공정 등 지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u></p> <p>4.~12. (생략)</p> <p>제383조(지반 등의 인력굴착시 위험방지)</p> <p>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u>인력으로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를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 사업주는 <u>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제161조(조립 등의 작업) ① <u>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 또는 해체 작업</u></p> <p>.....</p> <p>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63조(거푸집지보공의 안전조치)</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지주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u></p> <p>4.~12. (현행과 같음)</p> <p>제383조(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p> <p>① <u>굴착하는</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③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94. 3. 29. 공포, 부령 제91호)의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p>제12조의 2(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원자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p>

부 록 1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p>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근로자에 대하여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작업방법·건강관리요령 및 관계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방사성물질의 취급장소안에서의 객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시키고, 그 뜻을 작업장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3.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4.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5. 방사성물질의 보관·저장 또는 운반은 부식되거나 새지 아니하는 용기에 하여야 하며, 용기의 겉면에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라는 뜻을 표시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④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94. 1. 7. 공포, 부령 제88호)의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등의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p> <p>……………</p> <p>……………</p> <p>……………</p> <p>…………… <u>별표 5의2</u>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부록 1

개 정 전			개 정 후		
[별표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제3조제 1항 관련)			[별표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제3조제 1항 관련)		
작업명	작업 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작업명	작업 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11. (생략)			1.~11. (현행과 같음)		
12. 타워크레인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신 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u>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u> 2.~3. (현행 1, 2와 같음)
13.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u>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u> 2.~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u>기중기운전 기능사의 자격</u> 2.~3. (현행과 같음)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자체·정기검사 업무를 포함한다)		1.~3. (생략) (신 설)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삭제)		1.~3. (현행과 같음)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u>자</u>
15.~20. (생략)			15.~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양화장치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u>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u>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u>자</u>
		(신 설)	[별표5의 2] 양화장치운전작업기능습득교육기관의 시설기준(제4조제1항관련)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인원별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설					
가. 교실		m ²	60	60	60
나. 실습장		m ²	200	250	300
다. 공구 및 재료실		m ²	30	40	50

부록 1

개 정 전			개 정 후				
			2. 장 비				
			가. 양화기	대	1	2	3
			나. 드릴머신	대	1	1	2
			다. 그리이스건	개	3	6	9
			라. 튜빙툴커터	세트	1	1	2
			마. 와이어커터	대	1	2	3
			바. 버니어캘리퍼스	개	3	6	9
			사. 복수렌치	세트	3	6	9
			아. 바이스	대	1	2	3
			자. 샤클	개	5	10	15
			차. 도르레	개	5	10	15
			카. 멀티메타	대	2	4	6
			타. 일반공구	세트	5	10	15
[별표6] 자격취득·기능습득분야 교육내용 및 기간 (시간) (제7조관련)			[별표6] 자격취득·기능습득분야 교육내용 및 기간 (시간) (제7조관련)				
교육명	교육 내용	기간 (시간)	교육명	교육 내용	기간 (시간)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양화 장치운전 작업자격 취득	이 론 실 기 1. 관계법령 2. 공업수학 및 기초 물리에 관한 사항 3. 하역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1. 공구에 관한 사항 2. 하역보조기구 취급· 사용에 관한 사항 3. 장비취급에 관한 사항 4. 양화기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5. 작업전후 점검사항	3개월		

부록 1

개 정 전	개 정 후
<u>(신 설)</u>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1] 제13호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p>

눈길마다 안전확인
손길마다 안전점검